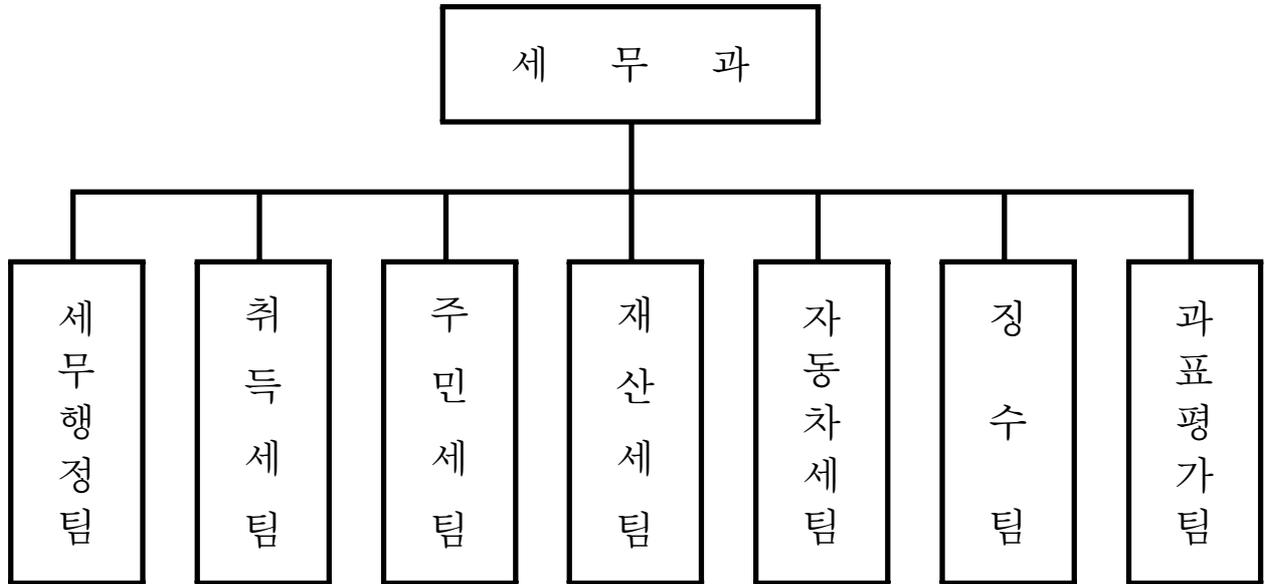


(세무과)

□ 기 구 (7팀)



□ 인 원 (28/28)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기능직
계	28/28	1/1	7/7	9/8	6/7	5/5	-
세무행정팀	5/5	1/1	1/1	1/1	1/0	1/2	-
취득세	4/4	-	1/1	2/2	1/1	-	-
주민세팀	4/4	-	1/1	1/1	1/2	1/0	-
재산세팀	3/3	-	1/1	1/1	1/1	-	-
자동차세	3/3	-	1/1	1/1	-	1/1	-
징수팀	6/6	-	1/1	2/1	2/3	1/1	-
과표평가팀	3/3		1/1	1/1		1/1	

稅 테-크와 납세자 A/S 운영

□ 사업개요

- 현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대비 징수액 향상
 - ▣ 징수 목표액 116,620백만 원 대비 ☞ 105% 달성
- 기 간 : 2008. 1. 1 ~ 2009. 2. 28
- 공평한 세부담 실현을 위한 과세행정 지향 및 납세자에게 찾아가는 현장행정으로 세수증대 기여

□ 추진계획

-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_____ 정기분 세목
- 납세자에게 찾아가는 세무안내 _____ 연 중
 - 지방세 설명회 및 손에 잡히는 『稅 테-크』 운영 : 연4회
- 현장중심 세정 운영 및 홍보 _____ 세목담당
 - 정기분 세목의 신속·정확한 부과
 - 납세자 A/S운영
 -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에 대한 감사 SMS 발송
 - 자동이체 납세자 통장잔액 확인 문자서비스 제공
 - 차량이용 움직이는 홍보 : 다중밀집 및 단독 지역 등 홍보사각 지역 중점
 - 다각적인 납부 홍보 : 대형마트 영수증 및 아파트 게시판(승강기) 활용
 - 현장중심 징수 독려반 운영
 - 세목별 현장실사 확장 운영 및 대장정비

□ 기대효과

-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부과·징수율을 높이고, 납세자에게 찾아가는 세무안내 및 현장행정 중심의 패러다임 구축을 통한 세수증대 기여

납세편의제공을 위한 전자납부제도 확대운영

□ 사업개요

- 기 간 : 연 중
- 수집대상 : 지방세 자동이체, E-mail주소, 핸드폰
 - ▶ 홍보대상 ⇒ 지방세 전자납부제도 편리성
- 세 목 : 정기분 지방세
- 방 법 : 공동주택을 대상으로한 홍보 및 신청서 전달
 - ⇒ 납세자 작성 후 우편 재 발송 또는 구/동 주민센터 제출

□ 추진계획

가. 지방세 전자납부 운영 _____ 41,486건 /5,732백만 원

나. 중점추진사항

-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전자납부제도 활성화

- 아파트 현황

동별	계	심본1	심본	소본1	소본2	소본3	범박	괴안	역곡3	송내1	송내2
계	31,868	797	1,501	194	579	7,188	5,721	5,482	2,593	4,691	3,122

- 전자납부(송달)제도 수집 기반 구축 ☞ 1단계

- 수집목표 : 5,000명

- 지 역 : 소사본3동, 범박동

- 대 상 : SK(아), 뜨란채 4단지(아), 현대홈타운 1~5단지

- 방 법 : 관리사무소 협조체제를 통한 안내문 및 신청서 배부 후
납세자 작성 ⇒ 우편 재 발송 또는 구/동 주민센터 제출

- 지방세 전자납부 안내문 및 신청서 자체제작 ☞ 2월

- 지방세 전자납부유도 홍보활동 전개 _____ 연 중

- 2008년도 정기분 지방세 부과시 홍보

- 민원부서·주민센터 방문 민원 전자납부 유도 및 인센티브 부여 안내 홍보

□ 기대효과

- 지방세 징수율 증대를 위한 전자납부(송달)제도의 인식 확산 및 저변 확대
- 전자납부(송달) 제도의 편리성 홍보와 납세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전자 행정기반조성 및 전자 납부율 증대 극대화

취·등록세 인허가 연동 신고체계 구축

□ 사업개요

-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인·허가 시 세무과를 경유하여 취·등록세 신고 및 고지서 교부 연동 처리하도록 개선
- 최초 인·허가 시 지방세 납세의무 및 자진신고 사전예고(안내) ⇨ 1단계
- 신고필증(사용승인서) 교부 시 취·등록세 신고 및 고지서 교부 ⇨ 2단계

□ 추진계획

- 추진시기 _____ 연중(인·허가증 교부 시)
- 대 상 _____ 105건
 - 건축분야(60건) : 증축, 대수선, 가설건축물 등
 - 지적분야(40건) : 지목변경, 토지형질변경
 - 사치성재산(5건) : 유흥주점 영업허가
- 인·허가 연동 신고체계
 - 운영흐름도 : 인·허가 신청 시 지방세 납세의무 사전안내 『최초 접수 : 인·허가 부서』 ⇒ 사용승인서 등 인·허가증 교부와 동시 세무 부서로 안내 『인·허가 부서』 ⇒ 취·등록세 신고 및 고지서 교부 (세무과) ⇒ 납부(구 금고)

□ 기대효과

- 인·허가 신청부터 완료시 지방세 자진신고부터 납부까지 민원처리 시 1회에 One-Stop 종합민원 처리시스템 구축
- 추징에 따른 조세저항을 일소하고 과세권자의 행정력 낭비요소 사전 예방

재산세 2% 확충을 위한 현장행정 추진

□ 사업개요

	'07년	'08년
세수규모	⇒ 8,611백만원	9,900백만원
	'07년 보다 15% 1,292백만원 ↑	

□ 세부추진계획

○ 분리과세대상 토지 일제조사 - 계수동 59-9번지 외 3,704건

구 분	1차	2차
시 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'08.3월~4월 - 과세대장 전수대사 ▪ '08.5월~6월 - 사용현황 현장검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'08. 8월 - 과세예고 ▪ '08.10월~12월 - 현장 확인 및 과세예고
주요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공부상 농경지 ▪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▪ 무허가·불법건축물 토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1차 조사 미결 토지 ▪ 소유자 이의제기 토지
방 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GB지역·공업지역·녹지지역 등 지역별 구분 조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현장 확인 재실시
내용 및 결과반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용도지역·지목·소유자·취득시기 등 서류심사와 실제 이용 상황 검증을 통해 고유목적 미사용 토지 과세전환 ☞ 분리과세 ⇒ 종합·별도합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1차 조사분 과세유형 최종결정 9월 정기분 반영 ▪ 2차 조사분 과세유형 최종결정 수시분 부과

□ 기대효과

- 대장과세의 단점을 보완하는 현장중심의 확인행정으로 공평한 과세 질서 유지
- 저율로 과세되는 농지·공장용지·녹지지역 부속토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재원확충 기여

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특수유형주택 사실조사

□ 사업개요

- 조사대상 개별주택의 공정하고 합리적 결정으로 과표 현실화에 기여
- 주택특성 조사 시 주택 소유자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
- 특수유형 주택에 대한 별도의 조사기간 설정 운영

□ 세부추진계획

- 개별주택가격조사 _____ 8,217건
 -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주택과약등 제반준비 : '07. 10,11월
 -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: '07.12월 ~ 08.2월
- 개별주택가격 검증
 - 산정가격검증 ⇨ '08.3월
 -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(20일) : '08. 4월
 - 가격결정·공시 ⇨ '08. 4.30일
 - 이의신청기간 운영 : '08.5월
- 특수유형주택 및 겸용주택 조사
 - 조사계획 및 조사일정 확정 ⇨ '08. 5월중
 - 필지, 건물 불일치 특수유형주택 : 415건
 - 층별 이용 현황 상이 겸용주택 : 1,984건
 - 현지조사 및 확인 ⇨ '08. 7월 ~ 9월
- 민원참여기회 확보
 - 특수유형/겸용주택 소유자등에게 조사 안내문 발송 ⇨ 2,399건
 -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참여 『안내문구』 삽입
 - 접수된 민원과 함께하는 공평한 사실조사 실시
 - 현 이용 상황 현지출장 촬영 후 DB관리

□ 기대효과

- 2005년부터 시행된 주택공시가격의 합리적인 연착륙이 필요한 시점으로서,
- 주민과 함께하는 정확하고 투명한 주택가격조사를 통한 과표 현실화 정착

저비용 고효율의 체납관리시스템 운영

□ 사업개요

- 기 간 _____ 2008. 3. 1 ~ 2009. 2.28
- '08년 이월예상 체납액(체납자별 5백만원이하) _____ 5,500 백만원
- 정리목표 _____ 3,025 백만원 【이월액의 55%】

□ 추진계획

- 회계년도 초기 집중적이고 철저한 채권분석 — 징수가능여부 판단
 - 징수 가능분 : 공매의뢰, 관허사업제한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독려
 - 징수 불능분 : 회계연도초에 과감한 결손처분
- 체납처분 기간의 최소화(현년도분 포함) — 체납의 장기화 예방
 - ▶ 제1단계 : 체납즉시 채권확보 및 독촉고지
 - ▶ 제2단계 : 공매예고 (체납 2개월 경과즉시)
 - ▶ 제3단계 : 공매의뢰 (공매예고 1개월 경과후)
 - ※ 공매배당후 잔액발생시 결손처분
-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— 소멸시효 전까지 철저관리
 - 정기적 재산조회(연 2회이상) 및 체납사실 통보(연 1회)
- 관외 및 법인 체납관리 특별전담반 운영 — 징수팀내 2인
 - 실태파악, 징수독려 및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등

□ 기대효과

-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관리 비용절감 및 정리를 향상 기여
- 조기 결손추진으로 징수불능분에 대해 불필요하게 징수독려 또는 체납 고지서 발송하는등의 낭비요인 제거 및 징수가능분에 대한 집중독려 가능

체납 세외수입 합동 징수반 운영

□ 사업개요

- 정리 목표율 : 23%
 - ▶ 2005년 21%, 2006년 18%, 2007년 11월말 현재 9.9% 정리
-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
 - ▶ 106명 130건 622,772천원(2007년 12월 20일 현재)

□ 추진계획

- 고액체납자 명단 및 체납 내역 조사 _____ 3. 31한
- 고액 고질 세외수입 체납자 합동정리반 편성 _____ 3. 31한
 - 총괄 운영 : 세무과
 - 반원 : 3조 6명(체납액 5천만 원 이상 부서 팀장)
- 합동 정리반 운영 _____ 4월 ~ 11월(7, 8월 제외)
 - 운영주기 : 월 1회, 셋째주 1주일간 운영
 - 운영방법 : 2인 1조 당 체납자 6명을 지정하여 현지 조사 및 독려
 - 독려 방법
 - ▶ 체납자 면담 : 납부 약속장 징구 등 체납 세외수입 납부 독려
 - ▶ 체납자 부재 : 체납 및 방문 사실 안내문 첨부 후 재조사 실시
 - ▶ 결과보고 : 복명서 제출 및 결손대상 결손 확행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(2008.6.22) 홍보 및 체납 안내 _____ 5월
 - 대 상 : 과태료 체납자
 - 홍보내용 : 관허사업제한, 신용정보 제공 등

□ 기대효과

- 고액·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납부 독촉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홍보로 과태료 자진 납부 유도